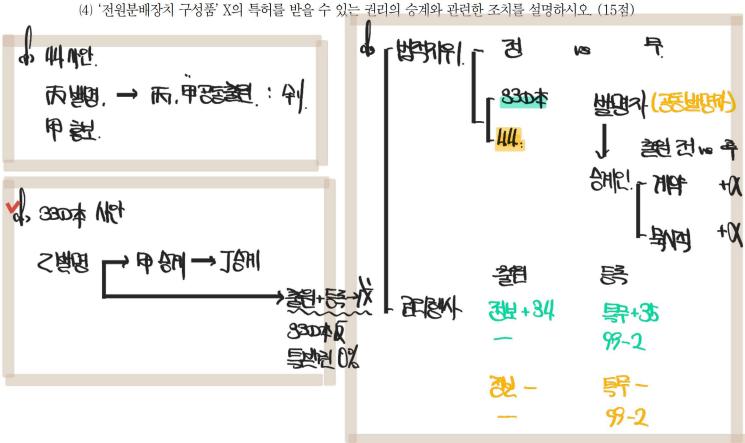


약'이라 한다). Z은 2015. 8. 25. 甲에게 위 발전기 세트 중 '전원분배장치 구<mark>》</mark> (전문개발하여 = 발달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이하 '제2계약' 이라 한다). 甲은 丙에게 위 발전기 세달 중 보조하였다. 丙은 甲과 역을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위 발전기 세트 중 '전원측 발명하였다.

제1계약과 제2계약에 따르면, 甲과 乙의 계약을 통해 발생한 모든 지식재산권 (등록될 수 있는 권리 를 포함한다)은 <u>甲을 거쳐 丁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제</u>2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X 특허발명 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자에 말망을 한 거에게 귀속되었다가 제1계약 **と なの型 1 X :** 그런데 Z은 2018. 5. 28. 특허발명 X를 출원하여 2018. 12. 17. 특허등록을 받았고, 2019. 7. 30 戊에게 X발명의 특허권을 이전해 주었다. : X: 전당 J (100%) 🚗 早太(0%) で一手出船 (1) 甲, 乙, 丙의 관계에서 '전기 자동차 발전기 세트'와 관련하여 공동발명자의 여부와 그 이유를 (影響的 (35) (2) 甲과 丙이 '전원측정장치

(3) 만일, 甲과 丙이 '전원특항》 (2) H 등 전 보면 등 하를 공유한 경우 甲과 丙의 지분 비율을 A 기존 설명하시오. (5점)



## | 対象 ← 内部の

문제·02 (20점) 전체자 판매달학생의 : 판례대비병 청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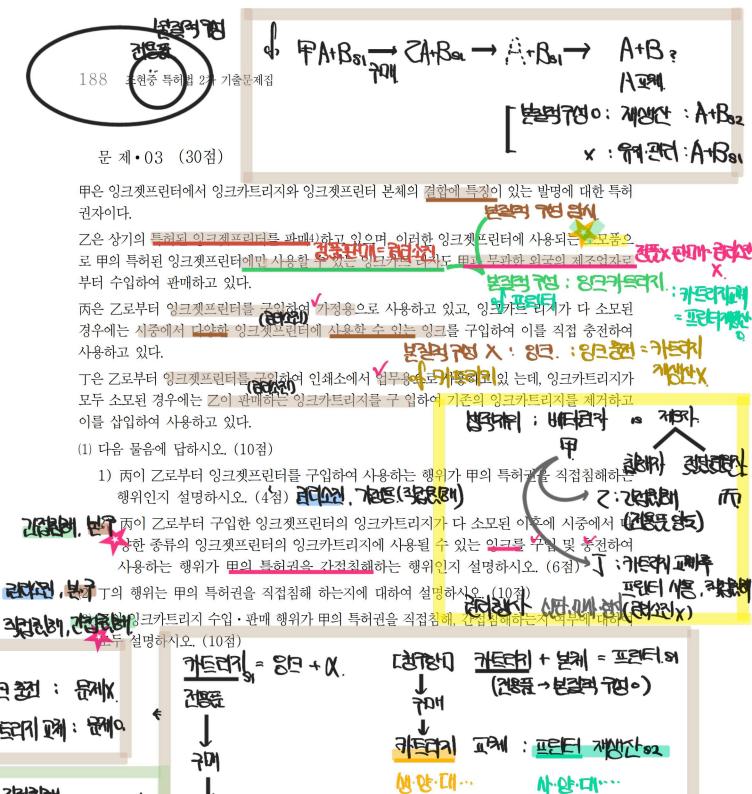
甲은 2014. 8. 6. 乙이 가진 특허 발명 통증치료제 X의 특허청구범위 전부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甲은 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이 기존 통증치료제 2~3개를 단순 결합한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甲의무효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심결(이하 '1차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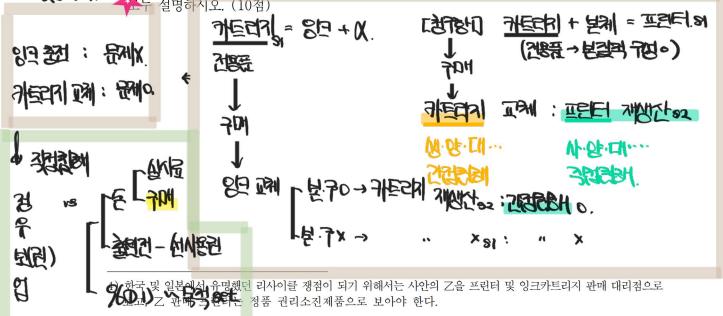
1차 심결에 대하여 甲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2015. 10. 8.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甲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 17. 그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 기가신된 章전 : 2017. 1.17. 그런데 부은 1차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하루 전인 2019. 1. 16. 이 사건 특허 발명 통증치료제 X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며, 다시 특허 발명 X의 특하정구범과 전부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이하 '2차 심판 청구'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M) 甲의 2차 <u>심판 청구에 관한 조치를</u>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과 중복심판 금지와 관련하여 설명 하시오. (15점)

v2) 甲의 2차 심판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5점)

新聞。 20k 。 20k 。





| 128回 | (50,000-0) ≤ (100,000-10,000) | x 3000,0000元 | 129年100,00002年10 | 12000元元の、05.9 | 128回 50,000 × 150,000円 × 0.05 | 120回 50,000 × 800,000円 × 0.05

변은 스마트폰에 대한 특허권자로 매월 10,000대씩 연간 120,000대의 생산등 턱을 가지고 있는 공장 설비를 2019년에 구축하였는데 2020년 5월과 6월의 2개월 동안에는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공사관계로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없었다. 甲은 2020년에 스마트폰 1대당 1,000,000원에 70 000 내를 파매하였으며 1대당 200 000의의 생물을 얻었다.

지원 기업을 얻었다. 한편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기기 시장에서 합리적 설치료율은 판매액의 5%이다.

甲이 フ의 침해행위 이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없다면, 甲이 乙의 2년20년 한 해 동안 의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으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 중영구원 등) 각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다 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계산과정을 포함한다.)

- (1)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른 손해액을 구하시**오.** (5점)
- (2)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액수를 구하시오. ♥(5점)
- (3)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해액의 합을 구하시오.**《**10점》

문제•01 (30점)

甲은 자동차 전력공급장치를 개발•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乙은 시판되는 차량에 적합한 자동차 전자장비 일체를 개발•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변은 '자동차 천명상업상치의 방수배선방식'(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자이자, '과 동차 전력공급장치의 방수배선을 위한 회로덮개'(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의 발명자인 甲화 전 종업원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받은 자인데 甲은 아직까지 이 사건 발명을 출위하지 아니

भया कारी अधिक

정

P

1

P

2

割

甲은 Z에게 자신의 영업 일부를 있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 서, 양도의 대상으로 이 사건 특허 및 이 사건 발명 관련 특허법상의 권리를 포함하였다. 위 사례를 토래되다음 물음에 합하지?

서, 생도의 대상으로 이 사건 특허 및 이 사건 발명 관련 특허법상의 권리를 포함하였다. 위 사례를 도대되다음 물음에 합하시오.

(1)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甲은 이 사건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였다. 이 사건 발명에

(2)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Z은 특허권 이전의 등록 없이 이 사건 특허를 실시하고 무기법.

있다. 이에 甲은 Z의 이 사건 특허의 실시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특허에 관한 권리귀속을 토대로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시오. (10점) 8年》即十二

(3) 특허심사관이 위 (1)에서 수험생이 제시한 결론과 달리 판단하여 특허결정하거나 거절결정하였다면 어떠한 특허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청구된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 심판청구인이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면 특허심판원은 어떠한 판단 또는 조치를 취해 ○350本 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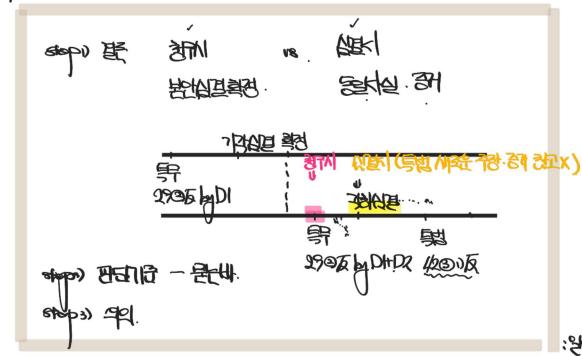
 保

लिसिह a 1432ड़ि

문제•02 (20점)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생단문

- (1)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는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등」이 있다. 이들 대법원 판결 중 전자는 일사부재리 판단시점을 '삼판청구시'로 보았고, 후자는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또 다른 이유로 일사부재리 판단시점을 '심결시'로 보았다. 이들 판례는 모두 유효하다. 이들 판례를 토대로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을 결정하는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시오. (10점)
- (2) 특허법 제163조 단서규정("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의와 본 규정에서 '각하임결'로 볼 수 있는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시오. (10 점)



STORM DHD2

문제•03 (30점)

- 甲은 백혈병 치료제로 약제학적 조성물인 발명 X를 하였다. 甲은 발명 X가 위장질확(이하 '위장병'이라 한다)의 치료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甲은 위장병 치료 용도를 청구범위로 하여특허 출원하고자 한다. 발명 X의 선행발명 1에는 '위장병에 선택적 억제제인 X의 시험이 A 연구소에서 다른 세계적인 연구 센터 B와 협력 하에 막 시작되었고 本語 보이다.
  - (very early results look exciting)'는 연구결과가 있다. 발명 X의 선행발명 2에는 'X가 위장병 종양의 비정상적 활성의 강력한 억제제이고,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종양의 치료에 유용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또한, 甲은 백혈병 치료제인 발명 Y가 백혈병 치료에서 경피투여를 했을 때 뛰어난 피부 침투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甲은 전신 경피투여 용법을 사용하면 치료 효과가 오랜 시간 일정하게 지속되고, 간편하게 투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甲은 백혈병 치료에서 발명 Y의 경피투여 용법이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 방법이라는 취지로 특허 출원하고자 한다. 다음 말음에 답하시오.
- (43. 회사자) 의약용도발명의 '약리기전'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5점)

  - (3) 실병 또는 약효와 함께 두여용법과 두여용당을 분산하는 경우, 두여용법과 두여용당이 발명의 기계 설명하고 세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면 특히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8점)

90184 90184 90184 90184 90184 90184 90184 90184

의 역명 등 원 · 왕천 . 원 · 영천 . 역 · 양천 . 역 · 양천 . 한 · 역 · 양천 . 한 · 역 · 양천 . 한 · 영천 . 한 · 역 · 양천 . 한 · 역 · 양천 . 한 · 역 · 영천 .

过过的一种的高不可了的思想 一一一一种是对他了中国 **新計** (n. 7137)
CHAPTER 09 (2011年) (12年) (12年)

문제•04 (20점)

甲은 '안먀기' (구성 A+B+C) 특허발명 X를 하였다. 乙은 甲의 특허발명 X와 유사한 구성을 가진 안마기 제품 Y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에 甲은 乙에게 틀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乙은 甲을 상대로 특허발명 X의 기재불비, 신규성 및 지보성 부정 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특허침해소송 중 Z은 판매 제품 Y는 X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Z은 특허침해소송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제품 Y는 특허발명 X의 구성요소 B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를 : **자**생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甲이 제품 Y에 대하여 X의 구성요소 C를 구비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甲이 제품 Y에 대하여 X의 구성요소 C를 구비하고 있다고 감정 신청을 하자 Z은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지 않아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甲의 감정신청이 철회되었다.

이후 Z이 제기한 특허발명 X의 등록무효 시판 가 기각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용료 청구기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자 Z은 침해소송 제1심 제9회 변론기일에서 구성요소 C에 관한 총전 찬물을 반복하였다. Z은 제품 Y의 구성요소 C 포함 여부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0회 변론기일에서 쌍방 모두 감정신청을 하지 않아 변론이 종결 : 지병하다 X 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0ml) 심결취소소송에서 자백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하시오. (6점) 생단문 (전→9명사 PRACE)

(2) Z이 특허침해소송 중 '어떤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다'라고 한 표현은 재판상 자백인지 설명하고 취소가능한지 설명하시오. (14점)

. (14治)

- NHA! MEEN

是州

Japans type. BHM33HB us ABA 79.

一路幽山。

7 HUS

최오 : 가백**代**X

東部 你能的

AD 不好.

(他说用 → 實書 → 置.

290-2章 羽 首 (所. 到世 )

(所. 2世 )

(四. 2世 )

다. 다음 행인 원네. 정 유 (29→123→162) 보(司). - [천원] 10 제외 - 문건 업 A+B A+B 교통 문제 • 01 (30점)

甲과 乙은 "인체의 생리 정보 및 환경 정보를 검출하는 장치"인 사물인터넷(IoT)에 관한 특허발명 A를 공동으로 발명하여 2020. 3. 20. 특허등록을 받은 특허권자들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1) Z은 2020. 5. 20. 甲의 동의 없이 丙과 통상실시권허락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Z에게 통상실시료를 지불하고 특허발명 A를 제조하여 판매하던 중 특허발명 A가 신규성이 없음을 발견하고 2020. 7. 10.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丙의 특허무효심판청구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관련하여 甲, 乙및 丙의 상호 법적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4점) : (1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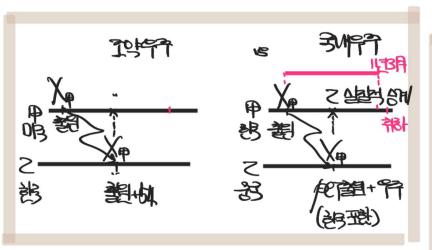
(2) 丁은 국내에서 특허발명 A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반제품은 중국으로 수출되어 중국에서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특허권자 甲은 丁의 실시가 특허발명 A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丁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丁의 행위가 甲의 특허권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丁이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상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 입증해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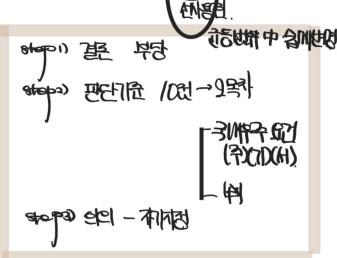
→2层补

문제•02 (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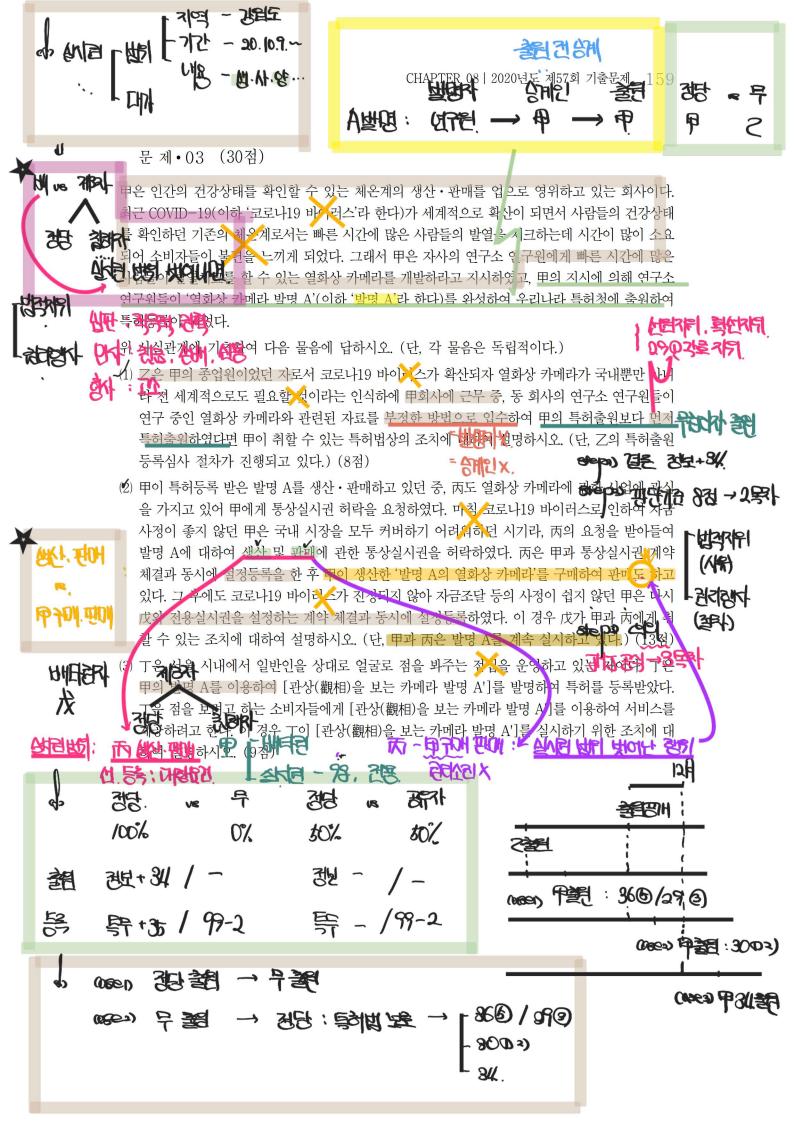
甲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는 '무인반송차'에 관한 武병 X(구성요소 A+B)를 완성하여 2019. 1, 4. 특허출원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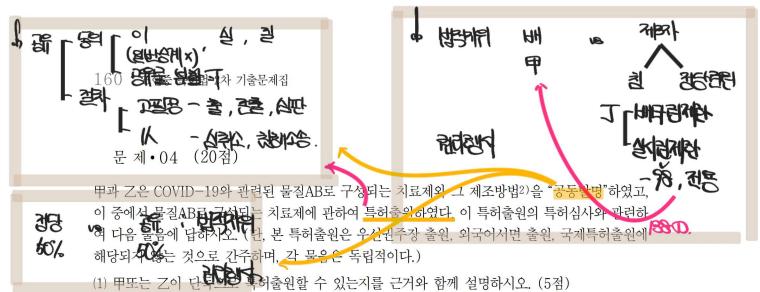
- (1) Z은 甲이 출원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였고, 丙은 Z로부터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협력조약이 정한 국제출원(이하 'PCT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할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을 하면서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하였다. 이후 丁이 후출원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고, 특허청에 후출원에 관하여 선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주장이 포함된 국내서면을 제출하였다. 이에 특허청장은 후출원의 출원시점에서 출원인과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 : 구실시기간의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특허청장의 무효처분의 타당성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10점)
- (2) 甲은 무인반송차에 관한 발명 X에 대한 개량발명 X'(구성요소 A'+B)를 완성하여 2019. 10. 7. 특허출원하여 2020. 6. 5. 특허등록을 하였다. 한편, 戊는 2019. 8. 5. 무인반송차에 관한 발명 X''(구성요소 A''+B)를 스스로 완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때, 戊는 甲의 개량발명 X'의 구성요소 중 A'가 진보성 결여가 명백하고, 자신의 발명 X''는 물론 그의 구성요소 A''도 甲의 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甲은 戊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戊의 법적 대응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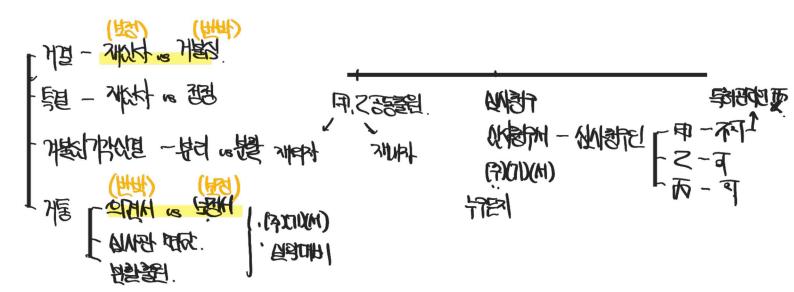
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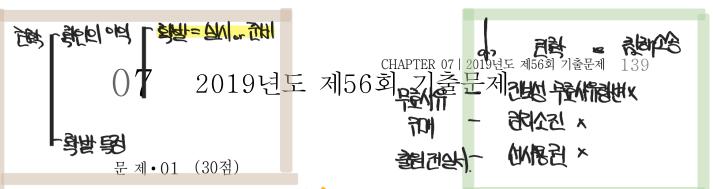
(2) 甲과 Z이 공동으로 특허출원한 경우, 甲과 Z이 공동으로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甲또는 Z이 : 3大口框. 단독으로 심사청구할 수 있는지와 <u>세3자가 임의로 심사청구할</u> 수 있는지를 근거와 함께 설명하 (予) (71)

(3) 甲과 Z이 공동으로 특허출원한 경우, 심사관으로부터 특허(水)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1항 제1 호의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 본 의견제출통지서상의 거절이유를 해소하고 또한 위 공동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기 위하여 공동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모든 수단3)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기 (10A) 기 (10A)



<sup>2)</sup> 실무적으로 치료제 및 제조방법은 폐암치료제 TOP10 判例 사안처럼, 의약발명(물질발명) 및 그 물질의 제조방법발명을 말하며, 물질발명과 의약용도발명은 1차 판례강의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개념 및 특허법상 취급(判例내용)이 다르므 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sup>3)</sup> 문제에서 거절이유의 정황을 제시한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실무적으로 물질발명은 특별한 보정방향의 이슈가 없다. 또한 각주 1처럼 물질발명은 의약용도발명과 다르므로 의약용도발명 判例를 혼용해서 언급하면 안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거절이유를 가정적으로 상정해서 어떻게 보정할 것인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에서 묻는 수단이란 절차를 말하며, 즉 이 문제는 의견서 제출기간에 할 수 있는 가능한 절차를 제시하고, 이들 절차를 서로 비교하여 실익을 작성할 것을 묻는 문제다. 실제 실무에서도 이 문제처럼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할지, 보정서를 작성할지, 심사관과 면담을 시도할지, 분할출원을 할지 각 절차의 실익을 안내해주고 상담해주는 것이 변리사 업무 중 하나다. 이 문제는 변리사 업무를 묻는 실무형 문제다.



甲은 시중에 판매되는 안마기의 내구성과 안마효과가 문제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획기적 으로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안마기(구성 A+B+C)를 발명하였다. 甲은 위 안마기에 대한 <u>체험행사를</u> 980기(국왕) 진행하였고, 그 체험행사를 녹화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터]) 동영상 게시 사이트에 올려 홍보용 으로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체험행사의 참가자들은 甲의 발명을 체험하는 모습을 녹화하고 사진

甲의 발명은 <mark>체험</mark>행사에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안마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때마침 영화로 인기를 끌게 된 영국의 유명 락그룹 퀸(Queen)의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Bohemian Rhapsody)에서 나오는 음절인 "마마(ma-ma)"와 같다고 하여 그의 발명은 "마마"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 甲의 "마마"가 인기를 끌자. <u>Z은 이를 모방하</u>여 안마기(구성 A+B+C)를 생산 · 판매 하였다.

그 우 뿌은 위 안마기가 줄원 전 인터넷에 게시되었던 점을 밝히면서 이에 대해 공지예외들 수장하 여 특허를 취득하였다. 甲이 특허를 취득하자 Z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고, 위외 같이 인터넷에 게시된 甲의 발명이 선행발명으로 존재하였으므로 甲의 특허발명이 신규 이 없어 무효일뿐더러, 乙이 실시하는 안마기 발명은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이므로 甲의 특허발단과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단, 각 물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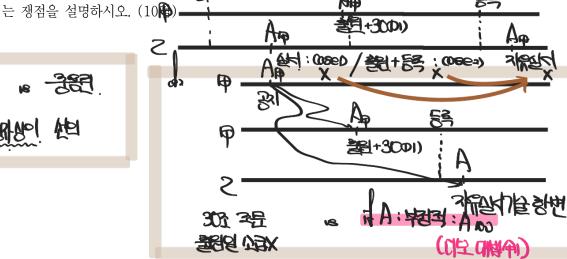
(1) 위 사안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하시오. (5점):**3/116** → 15計.

(2) 위 사안에서 Z의 실시행위에 선사용권 및 중용권의 법리가 유적적용될 수 지 여름에 교 분석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실관계와 달리, 푸이 최초로 출원한 특허의 청구범위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최초로 첨투 版記記 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에 대하여 국내우선권을 주장·출원하여 특허 T를 등록받았고, 甲의 선출원일 후 우선권주장출원일 전에 Z이 독자적 各 🖺 하여 발가위: ₩ 🖪 이계환 T의 권리범위 내인 경우, 乙의 법적지위를 설명하시요 (\*\*)

> |관계와 달리, 목이 왔마기 발명(구성 A+B+C)에 특허를 취로면 후 **3.** 구성 A ( )를 완성하였으나, 甲의 특허침해가 염려되어 위 발명 ()는 실시하 다. 다만 성업을 포기할 수 없어 장차 기술적으로 점차 보완 • 변경화여 개발하 성 A+B+C+D)에 대해 사업화 전략을 구상하였다. Z은 특허침해에 대한 문제 예병 상대로 i) 심판 1 : 실시하지 않기로 심판 2 : 미래에 완성하여 Y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각각 청구하였다. 이 및 Z이 청구한 각 심판에서 문제되

全 FEET PRESIDENT FEET



78

**川吟到)**时世

প্রেবা

的地

## 문 제·02 (20점) **코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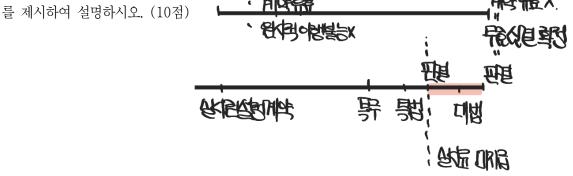
甲(특허권자)과 乙(실시권자)은 'AMVP 모드에서 영상 부호화 방법'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함)에 대하여 실시계약(이하 '이 사건 실시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실시계약 중 乙이 甲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기초적 사실관계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다음

- 2011. 8. 29. 특허출원(이하 '이 사건 선출원'이라 함)을 하였다.
- 2012. 1. 20. 이 사건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제출원(PCT)을 하였다.
- 2012. 3. 12. 위의 국제출원(PCT)에 대하여 당시 특허법 제203조가 정한 서면을 제출하여 국내절차를 진행하였다.(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함)
- 2012. 3. 16. 위의 국제특허출원을 기초로 분할출원(이하 '분할출원 A'라 함)하였다.
- 2014. 4. 25. 위의 분할출원 A를 기초로 분할출원(이하 '분할출원 B'라 함)하여 특허를 받았다.
- 그런데 분할출원 B(이 사건 특허발명)는 물론 분할출원 A의 특허출원서에도 '우선권 주장의 취지 및 이 사건 선출원의 표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선출원보다 늦게 출원된 선행발명(2011. 11. 7. 출원)으로 인해 진보성이 부정되었다.
-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독립적임)
- ↑ '분할출원 B'가 이 사건 선출원의 우선권주장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10점) '가당번 3명.
- (★) 위 사안에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모두 甲의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 원도 甲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상고 기각). 한편 특허법원에서 이 사건 특허가 무효 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자, 그 선고일 이후부터 ∠은 甲에게 이 사건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 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를 때, 이 사건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乙에게 특허발 명 실시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실시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여 논건



多用奶奶 电 柏色色 意刻

CHAPTER 07 | 2019년도 제56회 기출문제▲ 141

문제•03 (30점)

외국회사 甲(원고)은 '마찰이동 용접방법'에 관한 발명 A(이하 '이 사건 방법발명'이라 함)의 특허권 자이다. 甲과 Z사이에 이 사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장비인 '마찰교반 용접기'(이하 '이 사건 용접기'라 함)를 제조·판매해도 좋다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丙(괴고)은 Z로부터 Z이 제조한 이 사건 용접기를 구매하역 사용하였다. **乙: S경기 제**2·**판매** '**강등단원 方** 甲은 丙을 상대로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용접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방법발명을 업으로 실시함으로써 甲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丙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丙은 자신의 이 사건 용접기의 구매 및 사용행위에는 甲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독립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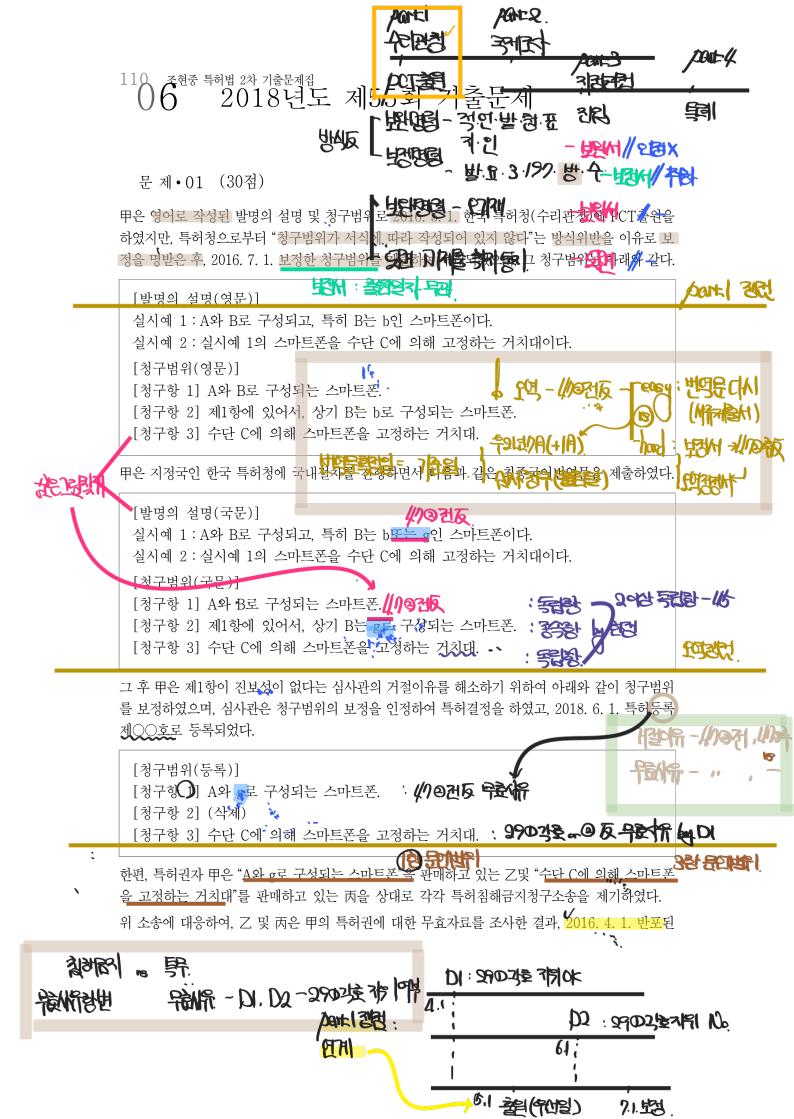
내 등 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丙의 주장의 타당성에 하는 장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8점) + 등 내

(2) 위 사안에서, 실시권차 스는 특허권차 甲의 공의를 얻어 이 사건 용접기를 국내 제조 후 국외에서 지원 (2) 위 사안에서, 실시권차 스는 특허권차 甲의 공의를 얻어 이 사건 용접기를 국내 제조 후 국외에서 구입된 경우 甲의 특허권의 효력 구성자입된 이 사건 용접기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전성 등 보험하**던 :

(3) 김 사실관계와 달리, 특허권자 甲은 직접 이 사건 용접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甲과 최초 구 제2 제한매 금지조건 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이 그 조건에 반하여 丙에게 (6점) 양도)한 경우 甲의 특허권의 효력이 丙의 이 사건 용접기의 구매 및 사용행위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4) 위 사실관계와 달리, 특허권자 甲(원고)은 소외 X와 이 사건 방법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 설정계 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에는 이 사건 방법발명의 실시장소를 제한하고 타인에게 재실시 허 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丁은 소외 X로부터 이 사건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이 사건 용접기(이하 '이 사건 전용품'이라 함)의 제작을 의뢰받고 20여 대를 제작해 소외 X에게 납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丁은 이 사건 전용품을 검수 · 시연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방법발명을 본 하는 사업 장상 보고 간접침해를 주장하며 손하게 첫 청사를 소리하는 등 제기한 경우 甲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 (10점)

1 331→ <del>123</del> → 331 m.



간행물에 게재된 "수단 C1에 의해 스마트폰을 고정하는 거치대(증거자료 1)" 및 2016. 6. 1.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수단 C2에 의해 스마트폰을 고정하는 거치대(증거자료 2)"를 확인하였다.

- 위 지문에 기재된 사항만을 근거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PCT 출원의 영어원문과 최종국어번역문의 법적지위를 설명하시오. (5점)

ASSET

(2) 지문에서 영어원문과 최종국어번역문이 차이가 있지만, 심사단계에서 영어원문과 대비하여 판단하지 않고 최종국어번역문을 근거로 보장을 원정한 심사관의 판단에 대한 절법성을 설명하시오.
(5점) : 제대 용식 → 나를 .

(4) 丙은 법원에 丙의 판매제품이 [청구항 3]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려고 한다. 판례를 근거로 그 주장의 논거를 기술하시오. (10점)

## "HOSPINATE SE

Steps) 建心。可是所聞地 野 (华)钙 所能 1衛信 1200116億1 是 到 1 AND MORE SHALLOWS इस्ट्रीम शिक्षण असाज ह 机學 阿彻历 巨色粉 世上 २. असीस मेरिट महिन्द्र DI'DO JAODESKI । वशस्त्र हिल्ला हिल्ह 1. 회인인 이익 - 회반=단시...(해 和野 1 衛 . C 断板部 侧侧 电影性 小. 世纪危 479对反 3. 那些 3. 那里 1991年 1895 18 나사면명 引出进 D 1993 (1993) ← 1990 ← 1916 (1996) ← 1990 ← 西欧州 加斯默洛山哈哈 A.B

切將即對其紀

문제•02 (20점)

甲은 "필기볼(1)과 투명인구과(2)으로 구성되는 볼펜"을 제1항으로, "필기볼(1)과 색변화인구관(3)에 누름장치(4)가 부착되는 볼페의 작동장치"를 제2항으로 특허출원을 하였다. 그 후 甲은 심사관으로 부터 아래의 거절이유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

[甲의 특허출원전에 반포된 간행물의 인용발명 1은 "필기볼(1)과 잉크관(2')으로 구성되는 볼펜", 인용발명 2는 "필기볼(1)과 색변환잉크관(3)으로 구성되는 볼펜", 인용발명 3은 "필 기펜촉(5)과 누름장치(4)로 구성되는 만년필"로 기재되어 있음]

- 1. 제1항과 제2항은 일 군의 발명에 해당되지 않아 단일성이 없으므로 특허법 제45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2. 제1항은 인용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3. 제2항은 인용발명 2 와 비교하여 누름장치(4)의 구성이 없어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인용발명 3의 누름장치(4)를 인용발명 2에 결합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발 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히 목모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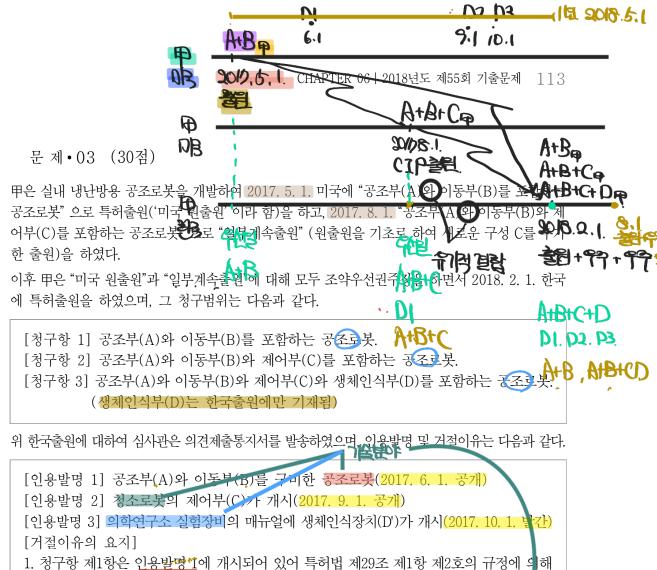
선행기에심 : 直對地區中 財命。

甲은 거절이유의 부당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5B

- (1)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제시하고 제1항과 제2항은 단일성 요건을 만족하므로 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의 논거를 기술하시오. (5점)
- (2) 신규성 판단에서의 실질적 동일성 요건을 제시하고 제1항은 신규성이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의 논거를 기술하시오. (5점) 움내

(3) 복숙 구성요소의 진보성 요건을 제시하고 제2항은 진보성이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주 장의 논거를 기술하시오. (10점) 령6) (1)+관 날펜 (1) [修] 你恐! 图62)反



- 2. 청구항 제2항은 동일한 공조부(A)와 이동부(B)가 인용발명 1에, 동일한 제어부(C)가 인 약10기본 지 X 용발명 2에 개시되어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특허받을 수 없음.
- 위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한국출원의 각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요건 판단시점을 설명하고 각 청구항에 대한 거절이유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12점) **골는 (1)**
- 2) 위 치문에서 甲이 2018. 7. 1. 한국출원을 하면서 미국 원출원과 일부계속출원에 대해 모두 조약 우선권주장을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아래의 설문에 답하시오. (거절이유는 위 지문과 동 일함) (12점)
  - 1) 한국출원 청구항 1에 대한 특허요건 판단시점을 설명하고 그 거절이유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6점)
  - 2) 한국출원 청구항 2에 대한 특허요건 판단시점을 설명하고 청구항 2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6점)
- (3) 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차이점과 재심사 청구의 장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6점)

是外.

문제•04 (20점)



甲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도로오염 및 가로수 고사를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하여, 2017. 12. 1. 특허청에 甲의 명의로 특허출원('원출원'이라 함)을 하였다. 그 청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성문 (C로 이루어지는 제설제. EN SINY りに [청구항 1] 성분 A와 성분 [청구항 2] 천구화 1에 있어서, 상기 성분 A는 전체 조성들을 기준으로 40~60 중량%, ♪기 성분 B는 30~50 중량%, 상기 성분 C는 20~30 중량%인 제설제. ▮ 결심비% : [청구항 3] 청구항 1 및 청구화 2에 있어서 상기 성분 D는 0.1 중량% 이상 함유되는 다음 내 : 100 대달 红:/001 : [청구항 4] LACK SICH : 100 미目 . [61] - [강 단계 이후에 약 에 네스 목을하여 성형하는 단계(S2)를 포함하는 제설제의 华阳和 항 5 분 사회 조명 이어 생기 특수한 혼합수단은 로터리식 교반기인 제설제의 제 洲山 寄野 **4年** 

> (1) 점차관이 특허립 제42조에 의해 거절이슈를 통치할 수 있는 청구항 및 그 근거를 (12점) **되는지금→ 청구산병** 가본에 (2절)

42**4** 1), 42**4** 1), **6**).

(3) 甲은 원출원의 실시를 준비하던 중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려고 한다. 원출원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4점) 4.5참4개

ार्थीये \ \ महारा सहिता पह साध्यात